

#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6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시가 설치·운영하는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와 서울 소재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과의 상생을 위해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예산 범위에서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7조의3제1항 신설)
- 나.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(안 제7조의3제2항 신설)
- 다.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의 지원사업을 위해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7조의3제3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,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개선사항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관련 규정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:  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4. 13.~5. 3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정(☎2133-4804)

##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중 “등 아동”을 “등이 아동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인증서 교부
2.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개선
3.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각 종”을 “각종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및 교육사업: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(공무원, 교사, 보육교사, 아이돌보미 등), 부모 등 <u>아동의</u> 놀이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이 아동</u>----- ----- ----- 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의3(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지원)</u> ① <u>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인증서 교부</u></p> <p><u>2.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개선</u></p>

제11조(놀이활동가 지원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아동 놀이문화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놀이프로그램 운영

2. (생략)

② (생략)

3.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놀이활동가 지원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-----  
-- 각종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안
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페이연계 지원 :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키즈카페(서울형 인증) 이용자가 서울페이상품권(서울형키즈카페머니)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페이상품권 발행비용 발생
- 현관 등 구입비 지원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소요경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(세출)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'23년)	('24년)	('25년)	('26년)	('27년)	
세 출	서울페이연계지원	825,000	4,950,000	7,425,000	9,900,000	12,375,000	35,475,000
	현관등지원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	총계	850,000	4,975,000	7,450,000	9,925,000	12,400,000	35,600,000

※ 서울페이지원내역 : 서울페이상품권 할인구매 지원 등(20%)

- 산출내역 : 66명(운영중 서울형키즈카페 이용정원\*1.2)×25일×4개월×25개소×25천원×20%(할인율)=825,000천원

※ 민간키즈카페(서울형 인증) : ('23년) 25개소 → ('24년) 50개소 → ('25년) 75개소 → ('26년) 100개소 → ('27년) 125개소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-	-	-	-	-	-
시비	사무관리비 등	850,000	4,975,000	7,450,000	9,925,000	12,400,000	35,600,000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850,000	4,975,000	7,450,000	9,925,000	12,400,000	35,600,000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정 주무관

(T. 02-2133-4804)